

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대출

하나 청년전세론



(기준일자 : 2021.12.23 현재 / 금리:연)

대출대상	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② 임차보증금이 7억원(수도권 외 5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③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급한 손님 ④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손님														
대상주택	등기부등본(또는 건축물관리대장)상 주거용 주택 및 준주택(노인복지시설 및 오피스텔)														
신청기간	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														
대출한도	최대 1억원 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														
대출금리	연 2.628% 2021.12.23 현재 [기준금리 1.588%(금융채 6개월물) + 가산금리* 1.040%(내부신용(ASS) 1~11등급, 대출기간 2년, 대출금액 5천만원 기준)] * 가산금리는 신용등급, 대출기간,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. 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%입니다 - 연체이자율[대출이자율+연체가산이자율(연3%)] : 최고 연 15%입니다.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관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이자의 부과시기: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.														
대출기간	6개월이상 3년내 (단,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)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,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. 이후 연장 불가														
담 보	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														
상환방식	만기일시상환(일시대출)														
중도상환 해약금	면제														
기 타	반전세(보증금 있는 월세)인 경우 하나 청년전세론과 하나 청년월세론 동시 이용 가능														
관련 비용	- 대출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세를 부담합니다. <table><tr><th rowspan="2">대출금액</th><th rowspan="2">인지세</th><th colspan="2">인지세 부담</th></tr><tr><th>손님 부담</th><th>은행 부담</th></tr><tr><td>5천만원이하</td><td>비과세</td><td>없음</td><td>없음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</td><td>70,000원</td><td>35,000원</td><td>35,000원</td></tr></table> - 보증료(손님 부담) :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	대출금액	인지세	인지세 부담		손님 부담	은행 부담	5천만원이하	비과세	없음	없음	5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	70,000원	35,000원	35,000원
대출금액	인지세			인지세 부담											
		손님 부담	은행 부담												
5천만원이하	비과세	없음	없음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	70,000원	35,000원	35,000원												
제출서류	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(원본)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계약금 영수증(계약금이 있는 경우),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등 (상당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)														

금리인하요구권	-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.
대출계약 철회권	-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-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 해지권	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 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'법 위반사실을 안 날'부터 1년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.)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,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.
유의사항	※ 입주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※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, 신용도, 주택보유수, 보유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※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 금리로 기준금리 금융채 6개월물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※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,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※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,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/신용상의 불이익(압류, 경매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※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 ※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 ※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(https://www.kebhana.com/)를 참조하시거나, 하나은행 고객센터(1599-2222)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 ※ 본 홍보물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